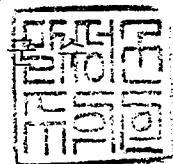


## 대구광역시달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0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9. 7.

제출자 : 달성



### □ 개정이유

- 군행정종합정보화사업 중 컴퓨터를 이용한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를 위하여 발급기 도입 시행에 따른 관인등록
- 전자관인의 등록사용을 위하여 전자화일로 승인, 관리하기 위한 절차 마련

### □ 개정근거

- 사무관리규정 - 전자문서, 전자관인 사용제시
-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 제11조의 2항
  - 무인발급기의 사용제시

### □ 주요골자

- 전자문서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을 위하여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공인은 공인을 입력하여 사용(안 제2조제6항)
-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절차
  - 전자공인 사용시 총무과장에게 등록 신청 → 전자공인등록대장에 등재 →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후 관리(안 제6조의2)

### □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: 붙임

##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군수는 전자문서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하되, 무인민원발급기에는 별표4의 공인을 사용한다.

제6조 제2항 중 “내무”를 “총무”로 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) ① 전자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등록신청(재등록 및 폐기신청을 포함한다)을 하여야 한다.

② 총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공인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의2서식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어야 한다.

③ 전산담당은 등록된 공인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후 관리하여야 하며,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총무과장은 등록된 전자공인을 출력하여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 보관하여야 한다.

제10조 제1항 중 “행정자치부에 비치된 인영부에 등재를 의뢰하여야 된다”를 “대구광역시장에게 제출된 인영부에 등재를 의뢰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

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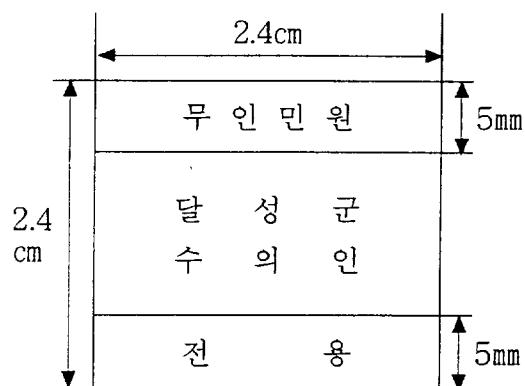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	<p>③ <u>전산담당은 등록된 공인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후 관리하여야 하며,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<u>총무과장은 등록된 전자공인을 출력하여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 보관하여야 한다.</u></p>
제10조(신조 및 개각인영 보고) ① 신조 또는 개각된 군수, 사업소장, 읍면장공인(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)을 [별지제5호서식]에 의하여 3부를 익월 5일까지 행정자치부에 비치된 인영부에 등재를 의뢰하여야 된다. ②(생략)	<p>제10조(신조 및 개각인영 보고)</p> <p>①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<u>-----대구광역시장에게 제출된 인영부에 등재를 의뢰하여야 한다</u>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

[별표4]



## [별지 제3호의2 서식]

## 전자공인등록대장

공인명					
종류		<input type="checkbox"/> 청인	<input type="checkbox"/> 직인	<input type="checkbox"/> 특수공인	
등록·재등록	전자공인 인영	등록일(재등록일) 최초사용일:	년	월	일
	전자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	등록(재등록) 사유			
		관리부서			
		비고			
폐기	전자공인 인영	등록일(재등록일) 최초사용일:	년	월	일
		폐기사유			
		폐기자	소속:	직급:	성명:
		비고			

\* 비고 : 전자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,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

[별지 제5호 서식]

공인신조(개각) 보고서

달성군수(인)	20	년	월	일	변경신규
					9cm
○○○○○	○○○○○○				
----- 27cm -----					

(새로이 각인된 공인의 인영)